

#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  
(여성가족과)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호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(제10조)·평등권(제11조)의 과도한 침해이며,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(제69조)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설 이용의 제한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삭제(안 제9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대한민국헌법 제10조(행복추구권), 제11조(평등권)

(기본권 침해) 정신질환(장애)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(제10조)·평등권(제11조)의 과도한 침해·제한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9조)

<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>

**제69조(권익보호)**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, 고용,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~ ③ 생략

**제89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9. 생략

10.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, 고용,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2. 9. 29. ~ 2022. 10. 19. (20일간)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3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
4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전염병 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”을 “전염성 질환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9조(이용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전염병 <u>질환자</u>이거나 <u>정신질환자</u></p> <p>2.·3. (생   략)</p>	<p>제9조(이용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 <u>질환자</u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